

## 고 시

## 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262호

## 도시관리계획(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-201(2016.7.14.)로 결정(변경)된 「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」에 대하여 2016년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2016.5.11)의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6년 9월 1일  
서울특별시장

## 1. 결정 취지

- 통합청사 신축을 위해 국가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 및 관리가 가능토록 하기 위하여 2016년 제6차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하고자 함.

## 2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: 변경없음

②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사항

가.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

1)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 : 변경없음

나.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사항

2) 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조서

□ 공공청사 결정(변경) 조서

| 구 분 | 도면<br>표시<br>번호 | 시설명  | 시설의<br>세분 | 위 치       | 면 적 (㎡) |           |         | 최초<br>결정일 | 비고 |
|-----|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|
|     |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기 정     | 변 경       | 변경후     |           |    |
| 신 설 | ③              | 공공청사 | -         | 옥인동 45-21 | -       | 증)2,952.8 | 2,952.8 | -         |    |

※ 상기 공공청사 변경 이외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변경없음

□ 공공청사 결정(변경)사유서

| 도 면<br>표시번호 | 시설명  | 변경내용                    | 변 경 사 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③           | 공공청사 | • 신설<br>- 면적 : 2,952.8㎡ | • 통합청사 신축을 통해 국가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 및 관리가 가능토록 하기 위함 |

## □ 공공청사 건축물의 규모 결정(변경)조서

| 구 분 | 도 면<br>표시번호 | 시설명  | 건축물의 규모 |        |           |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|             |      | 건폐율     | 용적률    | 높이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신 설 | ③           | 공공청사 | 60%이하   | 200%이하 | 3층(12m)이하 | 공공기여도에 따라 도시·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물 높이를 4층(16m)이하로 완화할 수 있음. |

※ 공공기여도 : 역사문화유산의 보호 및 개방, 주민지원시설의 확충, 건축물 내·외의 공공 개방공간 확충 등

※ 신설되는 공공청사③은 경우궁 유구 추정부지에 대한 역사문화유산의 보호 및 개방을 조건으로 서울시 제6차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(2016.5.11)를 통해 4층(16m)이하로 완화적용 하는 것으로 결정함

## □ 공공청사 건축물의 규모 결정(변경)사유서

| 도 면<br>표시번호 | 시설명  | 변경내용             | 변 경 사 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③           | 공공청사 | • 건폐율, 용적률 높이 결정 | • 경복궁 서측 전체의 경관을 고려하여 신축시 건축물의 건폐율, 용적률, 높이에 대한 기준을 결정함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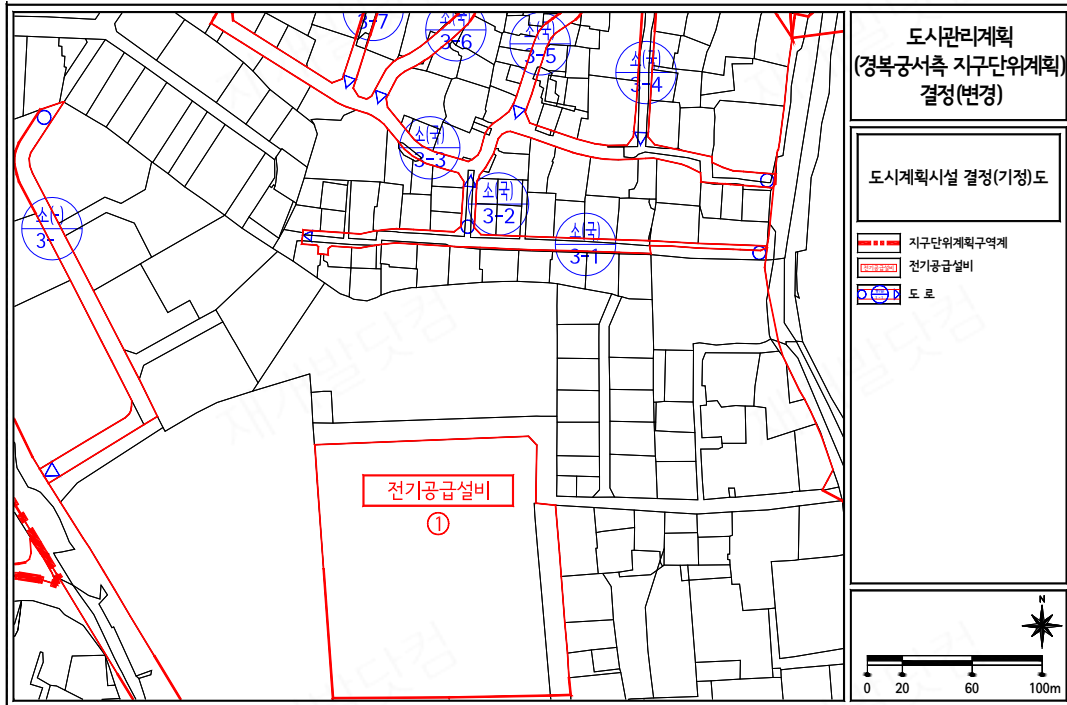
다.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: 변경없음

## 3. 관계도면 : 지형도면 참조

※ 첨부된 관계도면 등(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)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## 4.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한옥조성과(☎02-2133-5578) 및 종로구청 건축과(☎02-2148-2813)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.

□ 도시계획시설 결정(기정)도



□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도

